2018. 7. 18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055호 (2018.6.14)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4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1.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원가일: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제5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 제2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 시까지 적용합니다.

③ 우대금리 제공 시에는 제4조 제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2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한다)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②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③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④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